

# 근로빈곤과 자영 노동\*

이 병 희\*\*

근로빈곤 문제는 완화되고 있지만, 그 구성이 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비임금근로자, 특히 종속 자영업자와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종속 자영업자와 독립 자영업자 간 실직 위험과 빈곤 위험의 수준이나 유발 요인은 다르다. 종속 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취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빈곤할 위험이 큰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는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낮아서 빈곤할 위험이 크다. 또한 종속 자영업자는 실직률이 높지만 신속하게 재취업하기 때문에 단기간 빈곤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는 실직률이 낮지만 실직 시 빈곤 위험이 높고 빈곤을 경험하면 지속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한 저소득 노동시장 개선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1. 문제의식

최근 몇 년 동안 저임금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정책이 추진되면서 근로빈곤 문제가 완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코로나 발생 전까지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비임금근로자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자영업자 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계기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경감, 고용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도입 등 비용을 경감하고, 지역상품권 등 매출을 증대하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소득 개선 효과는 미흡했

\* 이 글은 이승호 외(2022), 『근로빈곤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한국노동연구원)의 일부를 요약 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lbh@kli.re.kr).

다고 평가된다.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도 활발했지만, 비전속적인 성격의 노무 제공자(프리랜서 등)와 독립 자영업자에게는 아직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자영업자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3%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이 2019년 대폭 확대되었지만,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의 1/10에 그친다.

이 글은 비임금 근로빈곤 문제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동시장의 개선과 고용안전망 확충 과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근로능력자를 대상으로 취업 여부별, 취업형태별 빈곤율을 분석한다. 근로능력자의 빈곤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근로빈곤의 구성과 특성은 변화하고 있음을 살펴볼 것이다. 제Ⅲ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1인 자영업자를 종속 자영업자와 1인 독립 자영업자로 나누어 근로 특성과 실업 위험을 비교 분석한다. 수요나 수익 기반이 제한된 시장에서 과잉 경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저소득과 소득 불안의 문제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이병희 외, 2016),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종속 자영업자가 새로운 근로빈곤층으로 등장하고 있다.<sup>1)</sup> 또한 종속 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취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소득에 놓일 위험이 큰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낮기 때문임을 밝힌다. 그리고 종속 자영업자의 실직 위험은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인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는 실직률은 낮지만 실직 시 빈곤 위험이 높음을 지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 II. 근로빈곤율의 취업형태별 요인 분해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를 이용하여 근로능력자의 상대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았다. 동 조사는 2012년부터 농가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전년도 소득을 조사하고 있는데, 소득 연도 기준으로 2011~20년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근로능력자는 18~64세 가운데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등록 장애인을 제외한 자로 정의한다. 소득보장제도와 소득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산출하였다. 상대빈곤율은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한 시장소득이 중위소득 50% 미만인 개인의 비중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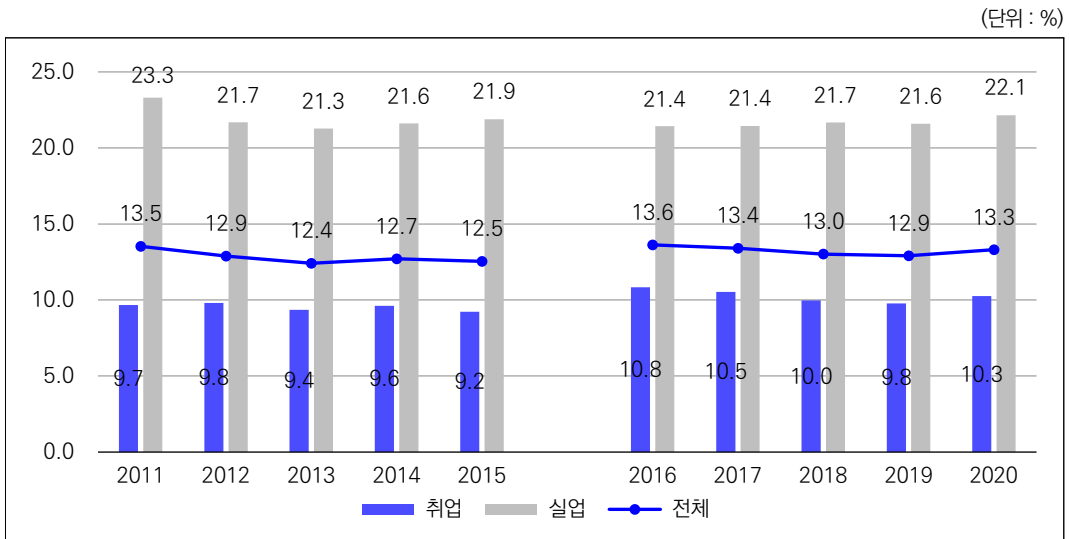
1) 자영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견되며, 상당수는 저소득과 소득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Boeri et al., 2020).

[그림 1]에서 근로능력층의 상대빈곤율을 2010년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2016년부터 소득 조사 결과를 행정자료로 보완함으로써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sup>2)</sup>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조사 데이터와 행정 보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이원진(2020)에 따르면, 행정 자료 보완으로 고소득층의 소득 과소 보고 문제가 완화되어 불평등도와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도 근로능력자의 상대빈곤율이 2016년에 급증하였다. 시계열 단절을 고려하면, 근로능력층의 상대빈곤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13.6%에서 2019년 12.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 근로능력층의 빈곤율이 증가하였다. 빈곤층일수록 경제 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근로능력자의 상대빈곤율은 13.3%인데, 취업 여부로 나누어 보면, 비취업자의 상대빈곤율은 22.1%로, 취업자의 10.3%를 상회한다. 또한 2010년대 후반에 근로능력층의 빈곤율의 감소는 취업자의 빈곤율 감소에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자의 빈곤율은 2016년 10.8%에서 2019년 9.8%로 감소한 반면, 비취업자의 빈곤율은 2010년대 후반에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림 2]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로 나누어 상대빈곤율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2020년 취업자의 빈곤율을 취업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상대빈곤율은 12.1%로, 임금근로자의 상

[그림 1] 근로능력자의 상대빈곤율 추이(시장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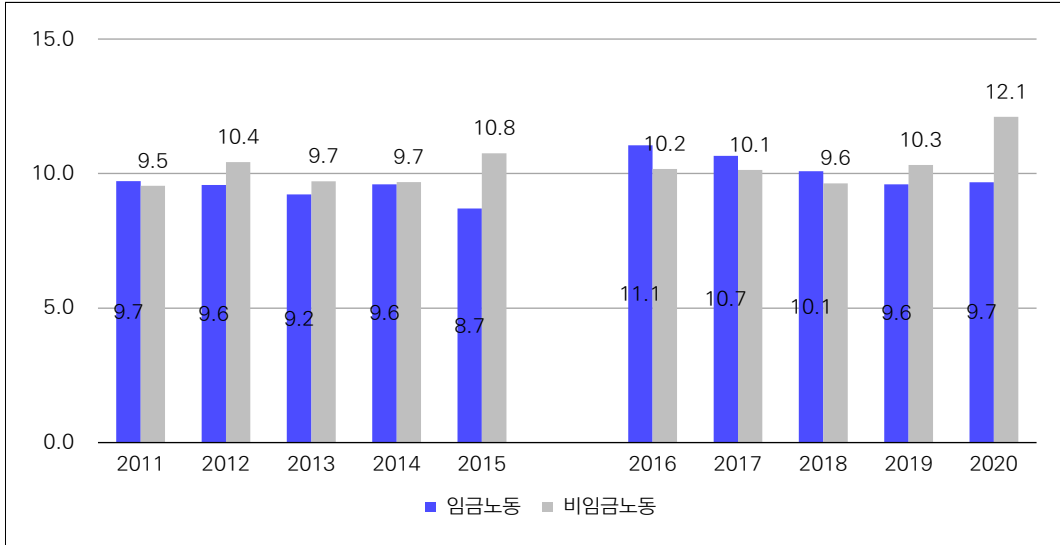


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2016년에 시계열 단절이 발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2) 면접조사를 이용하여 작성하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 등 소득과 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 정보를 2016년부터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행정자료로 조사결과를 보완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2] 취업자의 취업형태별 상대빈곤율 추이(시장소득 기준)

(단위: %)



주: 행정자료 보완에 따라 2016년에 시계열 단절이 발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대빈곤율 9.7%를 크게 상회한다. 2010년대 후반에 임금근로자의 상대빈곤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19년에 감소폭이 크다.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2018년에 예외적으로 낮지만,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며, 2019~20년에 크게 증가하였다.<sup>3)</sup> 2020년 빈곤율의 증가는 코로나19에 따른 자영 부문의 충격 때문인데, 후술하겠지만, 그 이전 비임금근로자의 빈곤율 증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의 빈곤 증가에 의해 주도되었다.

요인 분해(decomposition)를 통해 빈곤율 변화에 대한 집단별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근로빈곤의 구성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t$ 시점에서 전체 가구  $H_t$ 를  $n$ 개의 집단으로 나눌 경우, 전체 빈곤율  $p_t$ 는 개별 집단  $H_{it} (i = 1, \dots, n)$ 의 빈곤율을 가중평균한 값이다.

$$p_t = \sum_{i=1}^n s_{it} p_{it}, \text{ 단, } s_{it} = \frac{H_{it}}{H_t}$$

이제 빈곤율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3) 비임금근로자의 상대빈곤율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가 2016~18년에는 낮게 나타난다. 이는 행정자료를 통한 사업소득 정보 보완이 작다는 이원진(2020)의 발견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9년 이후 비임금근로자의 상대빈곤율이 급증하여 임금근로자의 그것을 상회하는 것은 행정자료 보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임금근로자에게 소득 충격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Delta p = p_t - p_0 = \sum_i \Delta s_i p_0 + \sum_i s_0 \Delta p_i + \sum_i \Delta s_i \Delta p_i$$

마지막 식의 첫 번째 항은 각 집단의 빈곤율이 초기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들 집단의 구성비 변화만 변화할 때, 전체 빈곤율의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보여주는 ‘구성효과’이다. 둘째 항은 집단 간 구성비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집단의 빈곤율이 변화하여 전체 빈곤율이 변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를 ‘빈곤율 효과’라고 하자. 마지막 항은 시간이 이산적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항이다.

〈표 1〉은 2016~20년에 걸친 빈곤율의 변화를 요인분해한 결과다. 우선 전체 빈곤율의 변화를

〈표 1〉 빈곤율의 요인분해(시장소득 기준)

	구성비		빈곤율		요인분해			
	2016	2020	2016	2020	구성효과	빈곤율 효과	오차 효과	전 체
〈전체 빈곤율의 인구집단별 요인분해〉								
18세 미만	0.194	0.176	15.5	12.9	-0.27	-0.49	0.04	-0.71
65세 이상	0.142	0.175	58.7	58.8	1.92	0.01	0.00	1.94
근로무능력자	0.066	0.059	18.6	19.1	-0.15	0.03	0.00	-0.12
근로능력자	0.598	0.590	13.6	13.3	-0.11	-0.19	0.00	-0.29
전 체	1.000	1.000	20.7	21.5	1.41	-0.64	0.05	0.81
〈근로능력자 빈곤율의 취업 여부별 요인분해〉								
취업	0.736	0.743	10.8	10.3	0.08	-0.42	0.00	-0.35
비취업	0.264	0.257	21.4	22.1	-0.15	0.19	-0.01	0.04
전 체	1.000	1.000	13.6	13.3	-0.1	-0.2	0.0	-0.3
〈취업자 빈곤율의 취업 형태별 요인분해〉								
임금노동	0.752	0.760	11.1	9.7	0.09	-1.04	-0.01	-0.96
비임금노동	0.248	0.240	10.2	12.1	-0.08	0.48	-0.02	0.38
전 체	1.000	1.000	10.8	10.3	0.01	-0.56	-0.03	-0.58
〈취업자 빈곤율의 세부 취업 형태별 요인분해〉								
상용근로자	0.572	0.598	7.2	5.9	0.19	-0.71	-0.03	-0.55
임시·일용근로자	0.181	0.163	23.3	23.4	-0.42	0.01	0.00	-0.40
기타종사자	0.023	0.027	7.9	8.9	0.03	0.02	0.00	0.06
고용주	0.050	0.046	1.9	2.9	-0.01	0.05	0.00	0.04
1인 자영업자	0.133	0.131	12.3	14.4	-0.03	0.28	-0.01	0.24
무급가족종사자	0.041	0.036	14.7	17.9	-0.07	0.13	-0.02	0.05
전 체	1.000	1.000	10.8	10.3	-0.32	-0.20	-0.06	-0.58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인구집단별로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자. 전체 인구를 18세 미만, 65세 이상, 18~64세 근로무능력자(정규교육기관에 재학하거나 등록 장애인인 비취업자), 18~64세 근로능력자 등 네 가지 인구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전체 인구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6년 20.7%에서 2020년 21.5%로 0.8%p 증가하였는데, 빈곤율이 증가한 주된 요인은 65세 이상 고령자 규모가 늘어난 구성 효과 때문이다. 한편 근로능력층은 전체 빈곤율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근로능력자의 시장소득 빈곤율은 2016년 13.6%에서 2020년 13.3%로 0.3%p 감소하였다. 취업 여부별로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면, 취업자의 빈곤율 감소가 근로능력자의 빈곤율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나타난다. 비취업자의 빈곤율은 증가하지만 구성 비중이 감소하여 비취업이 전체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0.04%p로 작다.

취업자 빈곤율 감소를 취업여부별로 요인분해한 결과를 보자. 18~64세 취업자의 빈곤율은 2016년 10.8%에서 2020년 10.3%로 0.58%p 감소하였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빈곤율 감소가 취업자 빈곤율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구성 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의 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세부 취업형태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상용근로자의 빈곤율 감소와 빈곤율이 높은 임시일용직의 구성비 감소가 2010년대 후반 전체 취업자의 빈곤율 감소에 기여하였다. 반면 고용주,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구성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증가하여 전체 빈곤율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기타 종사자는 구성비 증가와 함께 빈곤율도 증가하여 전체 빈곤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비임금노동의 집단별로 보면, 1인 자영업자, 기타종사자, 고용주 순으로 빈곤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sup>4)</sup>

### Ⅲ. 취업형태별 근로빈곤 분석

#### 1. 취업형태별 빈곤율

국제노동기구의 2018년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을 반영하여 통계청은 2021년 말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하였다. Gig 경제(gig economy)의 확산과 고용관계의 외부화 등으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가 모호한 근로형태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4)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기타종사자는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방문 교사 등으로 예시하여 조사한다. 2020년 규모가 628천 명인데, 해당 직종만 응답했을 가능성이 크다. 빈곤 증가에 기여한 1인 자영업자에는 상당수의 종속적인 자영업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중간 영역에 있는 의존계약자(dependent contractor) 지위를 신설하였다. 의존계약자는 '이윤 목적으로 다른 경제 단위를 위해 또는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적 특성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른 경제단위에 의존하는 자'로 정의된다. 자신의 작업조직에 대해 통제권을 갖지 못하고, 일이 수행되는 경제적 단위에 대해 지휘 권한을 갖지 못하며, 작업조직 혹은 시장에 대한 접근을 위해 다른 사람 혹은 경제적 단위에 의존하는 비법인 자영업자가 의존계약자로 분류될 것이다.

의존계약자를 식별할 수 있는 조사 자료는 없지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근로형태 부가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18년 기준)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 동 조사는 지난 3개월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 일자리를 대상으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 결정 주체, 일하는 방법·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 여부, 소득의 결정 방법 등 노동관계의 종속성에 대해 세부적인 설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3개월간 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명백한 임금 일자리와 명백한 자영 일자리를 제외한 근로형태로 종속 자영업자로 판별하였다.<sup>5)</sup> 명백한 임금 일자리는 ① 고용보험이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한 임금 일자리 ② 개인사업자가 아니면서,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회사가 결정(제3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음)하며, 일하는 방법·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이 있고, 일정한 임금(보너스 포함)이 지급되는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명백한 자영 일자리는 ①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② 프리랜서·프랜차이즈·자영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응답하고, 임대료·부동산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나 상품 가격을 본인이나 본인과 고객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일하는 방법·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이 없는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종속 자영업자는 명백한 임금/자영 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리에서 ①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를 기본급 없이 판매대금 또는 서비스 요금으로만 받거나<sup>6)</sup> 특수형태근로<sup>7)</sup>인 임금 일자리 ② 서비스나 상품의 가격을 본인이 결정하지 않거나 일하는 방법·근로시간·근로장소 등에 대한 지시나 규율이 있는 비임금 일자리<sup>8)</sup> 또는 특수형태근로<sup>9)</sup>인 비임금 일자리로 판별하였다.

〈표 2〉는 2018년 취업형태별로 시장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을 제시한 것이다. 2018년 취업자의 상대빈곤율은 9.6%로 조사되었다. 취업형태별로 비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11.5%, 임금근로자는 8.9%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와 달리 비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종속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11.4%로 비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기타 종사자의 빈곤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 가계금융복지

5) 공식적인 조사 자료에 기초한 추정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종속 자영업자로 부른다.

6) 부가조사 자료에서 a211206=3

7) 개인용 자료에서 p210612=1

8) 부가조사 자료에서 a211204 in (2,4,5) or a211205=1

9) 개인용 자료에서 pa215500=2 & (pa215502=1 or pa215503=1 or pa215504=1)

조사에서는 전속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종을 예시하여 조사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프리랜서 등을 종속 자영업자로 포괄적으로 식별하였기 때문이다.

세부 취업형태별로 살펴보면, 일용직의 빈곤율이 16.1%로 가장 높으며, 임시근로자 14.2%, 1인 독립 자영업자 13.4%, 무급가족종사자 11.7%, 종속 자영업자 11.4% 순으로 높다. 종속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임시근로자에 비해 낮지만, 상용근로자 7.4%, 고용주 8.2%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인다.

〈표 2〉 취업형태별 빈곤율(18~64세 취업자, 시장소득 기준, 2018)

(단위: 천명, %)

		전 체	빈곤	빈곤율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3,421 ( 57.9)	992 ( 44.5)	7.4
	임시근로자	2,386 ( 10.3)	340 ( 15.2)	14.2
	일용근로자	1,098 ( 4.7)	177 ( 7.9)	16.1
	소계	16,905 ( 72.9)	1,508 ( 67.7)	8.9
종속 자영업자		1,299 ( 5.6)	148 ( 6.7)	11.4
비임금근로자	고용주	1,534 ( 6.6)	126 ( 5.7)	8.2
	자영업자	2,540 ( 11.0)	340 ( 15.2)	13.4
	무급가족종사자	897 ( 3.9)	105 ( 4.7)	11.7
	소계	4,971 ( 21.5)	571 ( 25.6)	11.5
계		23,175 (100.0)	2,228 (100.0)	9.6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부가조사-개인용 자료와 22차년도 가구용 자료의 결합.

## 2. 근로빈곤층의 취업형태별 근로 특성

취업자의 연간 노동소득은 시간당 소득 \* 월 근로시간 \* 취업기간과 동일하다. 근로 특성에 주목하여 일해도 빈곤한 이유를 시간당 소득이 낮아서인지, 근로시간이 짧아서인지, 취업이 불안정해서인지를 살펴보았다.

취업 빈곤층의 근로 특성을 비빈곤층과 비교하면, 저소득 근로 비중이 높으며, 근로시간이 적고, 부분 취업 또는 일거리가 불규칙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취업 빈곤층의 근로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면, 저소득 근로 비중이 34.4%이며, 주 40시간 미만 근로 비중이 24.0%, 연간 전일제 취업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친다. 과거 취업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는 다르다. 한국 노동패널 2006년 자료를 분석한 이병희 외(2009)에서는 취업 빈곤층의 저임금 근로 비중이 2006년 3/4에 달하여 근로빈곤의 주된 이유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2018~19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따라 최근에는 임금보다는 단시간·부분·불규칙 취업 요



인이 더 크게 나타난다.

〈표 4〉를 통해 취업빈곤층의 근로 특성을 취업형태별로 살펴보자. 임시·일용 근로자는 저임

〈표 3〉 취업자의 빈곤 여부별 근로 특성(18~64세 취업자, 시장소득 기준)

(단위: %)

		비빈곤	빈곤	전 체
시간당 소득 <sup>1)</sup>	저소득	15.7	34.4	17.5
	중간소득	59.4	47.6	58.3
	고소득	24.9	18.0	24.2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2	3.0	1.4
	15~40시간 미만	11.1	21.0	12.1
	40~52시간	70.0	59.2	69.0
	52시간 초과	17.7	16.8	17.6
취업 기간 <sup>2)</sup>	1년 내내 전일제 취업	67.5	48.2	65.4
	1년 내내 불규칙 취업	8.0	12.2	8.5
	1년 내내 단시간 취업	8.1	13.3	8.6
	부분 취업	16.5	26.4	17.5

주: 1) 시간당 노동소득이 중위값의 2/3 미만이면 저소득, 3/2 이상이면 고소득, 그 사이는 중간소득으로 분류.

2) 노동패널의 직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연간 취업개월을 산출할 수 있음. 단속적·불규칙적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취업기간과 일거리의 안정성 여부를 결합하여 분석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부가조사-개인용-직업력 자료와 22차년도 가구용 자료의 결합.

〈표 4〉 취업빈곤층의 취업형태별 근로 특성(18~64세 취업자, 시장소득 기준, 2018)

(단위: %)

		상용	임시	일용	종속 자영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시간당 소득	저소득	10.3	44.1	29.0	23.3	8.0	28.0	
	중간소득	63.4	50.8	64.2	58.2	38.4	47.3	
	고소득	26.3	5.1	6.9	18.5	53.6	24.8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0.1	5.8	3.0	5.1	0.3	2.2	0.2
	15~40시간 미만	2.8	34.0	40.5	31.1	5.3	15.4	30.3
	40~52시간	83.8	50.8	47.4	52.8	56.0	43.9	39.9
	52시간 초과	13.3	9.4	9.2	11.0	38.4	38.4	29.6
취업기간	1년 내내 전일제 취업	84.8	38.7	13.1	39.6	80.0	56.0	46.0
	1년 내내 불규칙 취업	0.8	3.8	47.5	19.1	10.1	21.0	23.2
	1년 내내 단시간 취업	1.5	26.2	20.4	25.2	5.2	15.9	26.6
	부분 취업	12.9	31.3	19.0	16.1	4.7	7.1	4.2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부가조사-개인용-직업력 자료와 22차년도 가구용 자료의 결합.

금, 단시간 근로, 부분·불규칙 취업기간의 영향이 모두 관찰된다.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낮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종속 자영업자는 시간당 임금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짧거나 취업이 불규칙하거나 단절되는 비중이 높다.

### 3. 근로빈곤층의 취업형태별 실직 위험

취업자 개인별로 이웃하는 자료를 결합하여 취업형태별로 실직률을 산출하였다. 실직 여부는 다음 조사 시점의 경제활동상태로 판별하였다. <표 5>를 보면, 종속 자영업자의 실직률은 8.8%로, 임금근로자의 6.8%에 비해 높다. 반면 독립 자영업자가 다음 해 실직하는 비율은 2.9%로 가장 낮다.

세부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실직률이 가장 높으며, 종속 자영업자가 다음 해 실직하는 확률은 그다음을 차지한다. 한편 1인 독립 자영업자의 실직 확률은 2.7%로 낮다.

<표 5> 취업형태별 다음 해 실직률

(단위: 천명, %)

		계	실직	실직률
전 체		21,285	1,292	( 6.1)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15,459	1,052	( 6.8)
	종속 자영업자	1,204	106	( 8.8)
	자영업자	4,622	134	( 2.9)
세부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12,292	650	( 5.3)
	임시근로자	2,147	288	(13.4)
	일용근로자	1,020	114	(11.2)
	종속 자영업자	1,204	106	( 8.8)
	고용주	1,399	49	( 3.5)
	1인 자영업자	2,364	64	( 2.7)
	무급가족종사자	858	22	( 2.5)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부가조사-개인용 자료와 22차년도 개인용 자료의 결합.

실직률이 높더라도 신속하게 재취업하면 소득 상실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다. <표 6>은 실직하는 경우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임금근로자가 실직 시 가구 빈곤 상태로 전락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종속 자영업자와 자영업자 순이다. 세부 취업형태별로 보면,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1인 독립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순으로 실직 시

빈곤 진입률이 높다.

실직률과 빈곤 유입률을 함께 고려하면, 종속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실직률이 높지만 실직 시 빈곤 유입률은 낮다. 단기간의 노무제공계약을 반복하여 입이직이 활발한 종속 자영업자는 실직률이 높지만 신속하게 재취업하여 빈곤 유입률이 낮음을 알수 있다.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는 실직률이 낮지만 실직 시 빈곤 유입률은 높다. 물적 시설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는 폐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업 유지를 지속하려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sup>10)</sup>

〈표 6〉 비빈곤 취업자가 다음 해 실직하였을 때 빈곤율

(단위: 천명, %)

		실직 비빈곤층	빈곤	빈곤율
전 체		1,154	244	(21.2)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959	213	(22.2)
	종속 자영업자	82	15	(18.3)
	자영업자	113	17	(15.0)
세부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611	122	(19.9)
	임시근로자	252	62	(24.8)
	일용근로자	95	28	(29.7)
	종속 자영업자	82	15	(18.3)
	고용주	49	6	(13.2)
	1인 자영업자	47	9	(19.9)
	무급가족종사자	18	1	( 6.6)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부가조사-개인용-가구용 자료, 22차년도 개인용-가구용 자료, 23차년도 가구용 자료의 결합.

#### 4. 근로빈곤층의 빈곤 유형

우리나라 근로빈곤층은 빈곤 유입과 탈출이 모두 높은 특징을 가진다. 실직 위험은 높지만, 장기 실업 상태에 있지 않고 재취업하며, 고용 안정성이 낮아서 반복적인 실직을 경험하기 때문이다(이병희 외, 2009). 종속 자영업자와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 동학을 살펴보았다. 〈표 7〉을 보면, 종속 자영업자의 빈곤 유입과 탈출은 임금근로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1인 독립 자영업자도 종속 자영업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5년간에 걸친 빈곤 동학을 유형화하였다. Fouarge and Layte(2005)의 방식에 따라 빈곤 지속

10) 이병희 외(2022)에 따르면, 독립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낮지만, 폐업으로 인한 실직 비용은 임금근로자보다 훨씬 크며, 실직 직후만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고, 폐업 전에도 상당한 소득 손실이 발생한다.

〈표 7〉 취업형태별 1년 후 빈곤 유입과 탈출

(단위: %)

		빈곤 유입률	빈곤 탈출률
전 체		6.2	53.1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6.2	52.1
	종속 자영업자	6.8	54.9
	자영업자	5.9	54.2
세부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5.2	42.2
	임시근로자	10.8	59.6
	일용근로자	10.7	58.0
	종속 자영업자	6.8	54.9
	고용주	4.6	40.2
	1인 자영업자	6.5	55.9
	무급가족종사자	6.3	55.7

자료: 한국노동패널 21차년도 부가조사-개인용-가구용 자료, 22차년도 개인용-가구용 자료, 23차년도 가구용 자료의 결합.

기간, 빈곤경험 횟수, 빈곤주기 횟수 정보를 이용하여 우선 빈곤무경험층(the persistent non-poor)과 빈곤경험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빈곤경험층은 해당 기간 중 1년만 빈곤을 경험한 계층을 일시 빈곤(the transient poor), 1번 이상 빈곤했으되 매회당 빈곤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반복빈곤(the recurrent poor), 최소한 연속된 3년 이상 빈곤한 지속빈곤(the persistent poor)으로 분류하였다. 이때 빈곤 시작시기 또는 빈곤 종료시기를 파악할 수 없는 좌측 또는 우측 절단(left or right censoring) 문제는 고려하지 않는다(이병희 외, 2009).

한국노동패널 19~23차년도(소득연도 기준으로 2015~19년) 5개년 가구 자료를 결합하여 패널 자료를 구성하고, 21차년도 근로형태 부가조사의 취업형태 정보를 개인별로 결합하여 4,515개 가구의 18~64세 근로능력자 8,329명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8〉을 보면, 2018년 취업자가 2015~19년 5년간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16.8%로 나타난다. 연속된 3년 이상 빈곤을 경험하는 비율은 2.4%로 지속적인 빈곤에 머무르는 비중은 낮다. 반면 한 해만 빈곤 상태를 경험하는 비율은 10.6%, 빈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연속된 2년 동안 경험하는 반복 빈곤은 3.8%이다.

취업형태별로 보면, 5년간 빈곤 경험률은 종속 자영업자가 20.6%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다. 특히 종속 자영업자가 일시 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 경험률도 22.8%로 높은데,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비중이 종속 자영업자보다 높다.

종속 자영업자의 연간 근로 특성별로 빈곤 유형을 보면, 1년 내내 전일제로 취업하는 경우엔

〈표 8〉 2018년 취업자의 5년간 빈곤 경험과 유형

(단위 : %)

		빈곤무경험	빈곤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전체		83.2	10.6	3.8	2.4
취업형태	임금근로자	83.9	10.1	3.8	2.2
	종속 자영업자	79.4	13.2	3.5	3.9
	자영업자	81.7	11.7	3.9	2.7
세부 취업형태	상용근로자	87.7	8.3	2.6	1.3
	임시근로자	70.8	16.2	7.2	5.8
	일용근로자	64.2	18.7	12.0	5.0
	종속 자영업자	79.4	13.2	3.5	3.9
	고용주	89.6	8.6	1.3	0.5
	1인 자영업자	77.2	13.2	5.3	4.3
	무급가족종사자	80.0	13.3	4.5	2.3

자료 : 한국노동패널 19~23차년도 가구 자료와 21차년도 근로형태 부가조사의 결합 자료.

〈표 9〉 2018년 종속 자영업자의 연간 근로 특성별 5년간 빈곤 경험과 유형

(단위 : %)

	빈곤무경험	빈곤경험		
		일시빈곤	반복빈곤	지속빈곤
1년 내내 전일제 취업	82.2	12.6	3.3	1.9
1년 내내 불규칙 취업	85.2	6.8	7.1	1.0
1년 내내 단시간 취업	79.7	15.0	0.3	5.0
부분 취업	63.8	19.9	4.4	11.9

자료 : 한국노동패널 19~23차년도 가구 자료와 21차년도 근로형태 부가조사의 결합 자료.

빈곤을 경험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분 취업, 단시간 취업, 불규칙 취업하는 종속 자영업자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일거리가 불규칙한 경우엔 빈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비중이 높고, 부분 취업하거나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엔 빈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 IV. 요약과 시사점

비임금 근로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여 종속 자영업자와 독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최근 근로빈곤의 구성 변화와 노동시장 위험을 분석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와 노동패널(한국노동연구원)을 이용하여 분석한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능력자의 빈곤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비임금 근로빈곤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구조 개선 등 저임금 노동시장 개선 정책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빈곤율은 하락하고 있다. 반면 비임금근로, 특히 종속 자영업자와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둘째, 종속 자영업자와 1인 독립 자영업자는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을 유발하는 근로 특성은 차이가 있다. 종속 자영업자는 근로시간이 짧거나 취업기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빈곤할 위험이 큰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의 빈곤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취업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낮다.

셋째, 종속 자영업자의 실직률은 높지만 실직 시 빈곤 유입률은 낮고 빈곤을 경험하더라도 일시적인 상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임직이 활발한 근로 특성으로 인해 실직률이 높지만 신속하게 재취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 취업, 단시간 취업, 불규칙 취업 하는 종속 자영업자는 지속적이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1인 독립 자영업자는 실직률은 낮지만, 실직 시 빈곤 위험은 높으며, 빈곤을 경험하면 지속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물적 시설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는 폐업 비용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소득 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저소득 노동시장 개선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비임금 근로빈곤에게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장 소득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 안전운임제 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정 수수료를 정하는 제도를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업, 사회서비스업 등으로 확산하고, 편의점 업계처럼 본사에서 가맹점주의 최저수입을 보장하며, 불공정한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강화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지위와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시장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KL**

[참고문헌]

- 이병희 · 황덕순 · 윤자영 · 홍경준 · 이상은 · 강병구(2009),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 박찬임 · 오상봉 · 강병구 · 김숙경(2016), 『자영업자 문제와 사회적 보호』,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 · 정성미 · 김혜원 · 남궁준(2022),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위험과 고용안전망』,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호 · 이병희 · 이원진 · 조영민(2022), 『근로빈곤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 이원진(2020), 「가계금융 · 복지조사에 대한 행정 자료 보완에 따른 소득 분포 변화」, 『보건복지 Issue & Focus』 39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Boeri, Tito, Giulia Giupponi, Alan B. Krueger, and Stephen Machin(2020), “Solo Self-Employment and Alternative Work Arrangements,”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4(1), pp.170~195.
- Fouarge, Didier and Richard Layte(2005), “Welfare Regimes and Poverty Dynamics: The Duration and Recurrence of Poverty Spells in Europe,” *Journal of Social Policy*, 34(3), pp.407~426.